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인구구조의 변화 관련한 정책의 협의·조정 등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,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여 중장기 재정전략·재정준칙의 수립 및 사회연금·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,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장기전략업무”를 “미래전략업무”로, “재정혁신”을 “재정정책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장기전략국”을 “미래전략국”으로, “재정혁신국”을 “재정정책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장기전략국”을 “미래전략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재정혁신국”을 “재정정책국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3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4. 기업 등 민간중심 경제성장 관련 정책의 조사·분석

제1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·조정
2. 포용적 성장 관련 정책의 기획 및 협의·조정
3.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·조정
4. 경제분야와 관련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·조정
5.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·협의·조정
6. 인적자원의 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·조정
7. 고용 관련 동향 조사·분석

8. 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·조정
9.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·조정
10.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·조정
11.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·조정
12.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
13. 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·조정
14.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협의·조정
15. 소득분배,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·분석
16.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 및 보건·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·조정
17.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·조정
18.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·조정 및 지원
19. 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한 고용·복지·교육 분야 정책의 협의·조정

제17조의3의 제목 “(장기전략국)”을 “(미래전략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장기전략국”을 “미래전략국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3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의2,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지속가능경제발전 전략의 수립

5의2.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 : Environment·Social·Governance)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·조정

14의2. 인구구조 변화의 연구·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·조정

14의3. 저출산·고령화 관련 정책의 협의·조정

제19조의 제목“(재정혁신국)”을“(재정정책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재정혁신국”을 “재정정책국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3항제2호 중 “재정정책”을 “재정정책 및 전략의 수립·총괄·조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7호 중 “연금·보험 등 사회분야 지출구조조정”을 “사회연금·보험 재정추계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의2. 재정준칙의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33. 아시아·태평양 재정협력체의 운영

제19조의2제3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의5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.

2의2.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

2의3. 「국가재정법 시행령」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의 수행·관리

2의4. 「국가재정법 시행령」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

3의8.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별표 3 8)의 조직란 중 “장기전략국”을 “미래전략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하부조직) ①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, 국제경제관리관 1명 및 재정관리관 1명을 두되, 차관보는 경제정책·정책조정·경제구조개혁 및 <u>장기전략업무</u> 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,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, 재정관리관은 국고· <u>재정혁신</u> ·재정관리 및 공공정책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.	제4조(하부조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미래전략업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재정정책</u> ----- ----- -----.
② 기획재정부에 인사과·운영지원과·예산실·세제실·경제정책국·정책조정국·경제구조개혁국· <u>장기전략국</u> ·국고국· <u>재정혁신국</u> ·재정관리국·공공정책국·국제금융국·대외경제국 및 개발금융국을 둔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미래전략국</u> ----- ----- <u>재정정책국</u>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5조(복수차관의 운영) ① (생략)	제5조(복수차관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차관은 인사과·운영지원과·세제실·경제정책국·정	② ----- -----

책조정국·경제구조개혁국·장기전략국·국제금융국·대외경제국 및 개발금융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.

③ 제2차관은 예산실·국고국·재정혁신국·재정관리국 및 공공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.

제16조(경제정책국) ①·② (생략)
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23. (생략)

24. 소득분배,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·분석

제17조의2(경제구조개혁국) ①·② (생략)
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경제구조 개선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총괄·조정

2. 일자리를 통한 분배 및 성장 관련 경제정책의 조정

3.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·조정

4. 인적자원의 개발 및 인력수

-----미래전략국-----

③ -----재정정책국-----.

제16조(경제정책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.

1. ~ 23. (현행과 같음)

24. 기업 등 민간중심 경제성장 관련 정책의 조사·분석

제17조의2(경제구조개혁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·조정

2. 포용적 성장 관련 정책의 기획 및 협의·조정

3.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·조정

4. 경제분야와 관련한 교육정책

<u>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</u> <u>· 조정</u> 5. <u>소득주도 및 포용적 성장 관련 정책의 기획 및 협의·조정</u> 6. <u>소득분배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·조정</u> 7. <u>인구구조 변화 연구·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·조정</u> 8. <u>저출산·고령화 관련 정책의 협의·조정</u> 9. <u>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</u> 10. <u>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·조정</u> 11. <u>교육복지·주거복지·의료복지 관련 정책의 협의·조정</u> 12. <u>생활비 절감 관련 정책의 협의·조정</u> 13. <u>중장기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기획·조정</u> 14. <u>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·협의·조정</u> 15. <u>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</u>	<u>및 제도의 협의·조정</u> 5. <u>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·협의·조정</u> 6. <u>인적자원의 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·조정</u> 7. <u>고용 관련 동향 조사·분석</u> 8. <u>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·조정</u> 9. <u>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·조정</u> 10. <u>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·조정</u> 11. <u>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·조정</u> 12. <u>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</u> 13. <u>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·조정</u> 14. <u>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협의·조정</u>
--	---

<u>리 관련 거시경제 및 산업의 공급·수요 부문 간 동향·전 망 분석</u> <u>15의2.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 책의 총괄·조정 및 지원</u> <u>16.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환 경 변화 전반에 관한 경제정 책 수립 및 협의·조정</u> 제17조의3(장기전략국) ① <u>장기전 략국에 국장 1명을 둔다.</u> ② (생 략)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. 1. ~ 4. (생 략) <u>5.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정 책의 협의·조정</u> <u><신 설></u> 6. ~ 14. (생 략)	<u>15. 소득분배, 가계수지 등 가계 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·분석</u> <u>16.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 금제도 및 보건·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·조정</u> <u>17.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·조정</u> <u>18.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 의 총괄·조정 및 지원</u> <u>19. 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와 관 련한 고용·복지·교육 분야 정책의 협의·조정</u> 제17조의3(미래전략국) ① <u>미래전 략국-----.</u>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5. 지속가능경제발전 전략의 수 립</u> <u>5의2.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 SG : Environment·Social· Governance) 확산을 위한 인 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 괄·조정</u> 6. ~ 14. (현행과 같음)
--	---

<신 설>

<신 설>

15. ~ 21. (생 략)

제19조(재정혁신국) ① 재정혁신
국에 국장 1명을 두고, 국장 밑
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.

② (생 략)
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
다.

1. · 2. (생 략)

2. 중장기 재정정책의 수립 및
총괄 · 조정

3. ~ 8. (생 략)

9. 「국가재정법 시행령」 제39
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
의 수행 · 관리

10. 「국가재정법 시행령」 제39
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
결과와 재정 운용 간의 연계
에 관한 사항

11. ~ 16. (생 략)

17. 연금 · 보험 등 사회분야 지
출구조조정에 관한 사항

14의2. 인구구조 변화의 연구 ·
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 ·
조정

14의3. 저출산 · 고령화 관련 정
책의 협의 · 조정

15. ~ 21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재정정책국) ① 재정정책
국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2. ---- 재정정책 및 전략의 수
립 · 총괄 · 조정

3. ~ 8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11. ~ 16. (현행과 같음)

17. 사회연금 · 보험 재정추계에
관한 사항

18. · 19. (생략) <u><신설></u>	18. · 19. (현행과 같음)
20. ~ 32. (생략) <u><신설></u>	19의2. <u>재정준칙의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</u>
제19조의2(재정관리국) ① · ② (생략)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· 2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20. ~ 32. (현행과 같음) 33. <u>아시아 · 태평양 재정협력체의 운영</u>
제19조의2(재정관리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<u>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</u> 2의3. 「국가재정법 시행령」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 평가의 수행 · 관리 2의4. 「국가재정법 시행령」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 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	제19조의2(재정관리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<u>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</u> 2의3. 「국가재정법 시행령」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 평가의 수행 · 관리 2의4. 「국가재정법 시행령」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 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
3. ~ 3의7. (생략) <u><신설></u>	3. ~ 3의7. (현행과 같음) 3의8. <u>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
4. ~ 6의4. (생략) 6의5. <u>균형발전 영향평가의 수행 및 관리</u>	4. ~ 6의4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

6의6. ~ 6의11. (생략) 7. ~ 9. 삭제 <u>10. 국가재정 관리업무의 업무 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</u> 11. 삭제 12. ~ 15. (생략)	6의6. ~ 6의11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12. ~ 15. (현행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18